

총 무 처

부산지방경찰청 제 13 호 (720-4335)

1984.11.22.

제 1 부신처 총조 (행정조정실)

제 2 부 주요행사의 보안철저

1. 정부 주요행사의 준비단계부터 행사종료시까지의 모든

보안 철저를 기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고자 별
별도로 “정부 주요행사보안지침”을 시달하니 이행에 빈틈이 없
도록 철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정부 주요행사보안지침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부산지방경찰청(-1, 2), 나.

정부주요행사보안지침

1. 정부주요행사계획의 비문화 및 관리철저

- 가. 정부주요행사계획은 반드시 상급비밀이상으로 작성하여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.
- 나. 행사계획서는 행사유관기관에만 배포토록하고, 행사시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만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.
- 다. 행사계획서의 복제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부득이하여 복제할 시는 “보안업무규정 제22조(비밀의 복제·복사의 제한)”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토록 함.
- 라. 행사종료후 제반 관련문서는 소각함을 원칙으로 함.

2. 정부요인의 동정에 관한 보안철저

- 가. 정부요인의 동정에 관한 사항을 유·무선 통신으로 전파하여 서는 아니되며, 필요시에는 반드시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함.
- 나. 행차 연도작업등 정부요인의 동정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.
- 다. 정부요인의 동정을 방문기관 이외의 기관(상급기관, 소속기관, 인접기관)에는 일체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.
- 라. 정부요인이 비공식 또는 불시로 특정기관을 방문하시는 경우, 기관장등의 참석은 사전에 참석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임의참석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.

3. 행사준비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강구

- 가. 행사준비에 관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담당준비사항이 외의 행사내용에 대하여 일체보안조치를 하고, 업체별 담당준비사항에 대하여도 관계자외에는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함.
- 나. 각종 리본·명찰등 비표를 제작할 시에는 관할 경찰서등 관계기관에 입회를 요청하여야 하며, 제작완료시에는 원판·조판 등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.

4. 행사준비요원에 대한 보안강구

- 가. 행사준비요원을 정예화하여 최소인원으로 작업단을 구성하고, 개별임무 부여시에는 담당분야의 계획만을 지득케 함으로써 행사계획 전반이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.
- 나. 행사요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보안관리법규를 준수도록 함.

5. 대국민 통보의 제한

- 가. 국빈방한시 또는 정부요인의 외국방문시의 세부일정등 행동계획을 사전에 보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.
- 나. 특정한 지역 또는 도로에만 가두장식·현판·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행사의 장소·정부요인의 이동로등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.